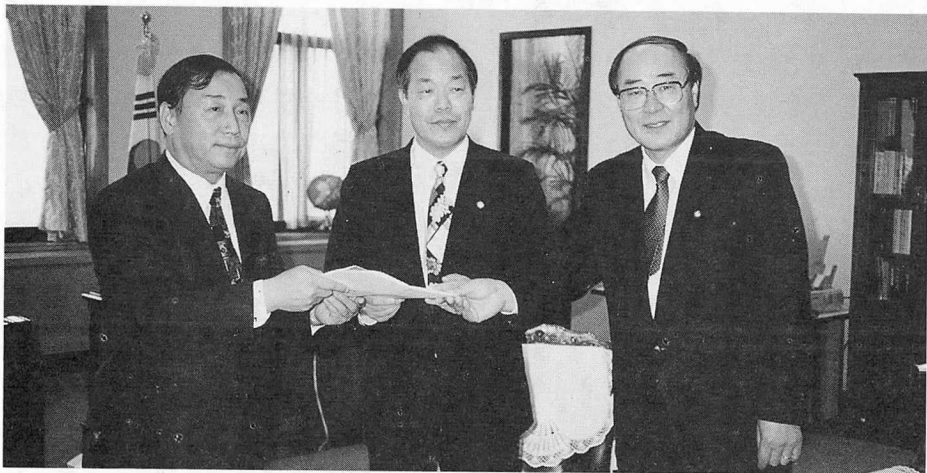


사료 등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회 입법 청원

- 축산관련단체, 김영진·정창현·박태영 의원 소개로 제출



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회 입법 청원서를 이종률 국무총장(왼쪽)에게 제출하는 김영진 의원(가운데)과 정창현 의원(오른쪽)

- 홍보부 -

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문제가 결국 국회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전동용), 본회(회장: 전동용),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강성원),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11월 1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과 정창현의원(민자), 재무위 박태영의원(민주)의 소개로 "사료 및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동용회장이 청원자 대표로서명한 입법 청원서는 이날 오전 김영진의원과 정창현의원이가 국회 이종률 사무총장을 방문, 직접 제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입법 청원서에서 "그동안 사료 및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해야 할 간접세인데도 사료 생산자에게 부과되어 결국 축산농가에 전가되는 것은 조세 체계상 모순"이라고 밝혔다.

청원서는 "농민에게 공급되는 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 어구 등 어업용 기자재에는 이미 부

가가치세를 비과세 하는데 반해 같은 농업용(축산업) 기자재인 사료 등에 과세하는 것은 헌법 제 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으로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입법청원서에서 현행 조세감면 규제법 제99조 제7호를 개정해 대통령이 정하는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축산용 기자재로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약사법에 의한 동물약품중 축산용 약품, 농촌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용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제출한 입법 청원서는 11월 4일 소관 상임위원 재무위에 회부되었으며 정기국회기간중 재무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국회 본회에서 상정, 처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재무부에서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재무위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축산관련단체 협의회에서 국회에 청원한 내용이다.